

「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, 책무 등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지원대상자 (안 제4조)
 -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
 - 해당건물 준공 후 20년 경과한 단독주택
- 다. 지원범위 및 규모 (안 제5조)
 -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%, 200만원 이내
- 라. 지원신청 및 선정, 지원제한 (안 제6조 ~ 제7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
안 제4조에서는 주택개선 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
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
안 제7조에서는 지원제한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-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5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, 제107조

【관계법령】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05조(취락지구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9. 2. 6.]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1조(용도지구의 지정) ① - 생략 -

②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·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·방재지구·보호지구·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1. 경관지구

- 가. 자연경관지구 : 산지·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나. 시가지경관지구 : 지역 내 주거지,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다. 특화경관지구 :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2. 삭제 <2017. 12. 29.>

3. 삭제 <2017. 12. 29.>

4. 방재지구

- 가. 시가지방재지구: 건축물·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
- 나. 자연방재지구: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, 하천변,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

5. 보호지구

- 가.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: 문화재·전통사찰 등 역사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나. 중요시설물보호지구 : 중요시설물(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다. 생태계보호지구 :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

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

6. 삭제 <2017. 12. 29.>

7. 취락지구

가. 자연취락지구 : 녹지지역·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나. 집단취락지구 :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8. 개발진흥지구

가. 주거개발진흥지구 :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나.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: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다. 삭제 <2012. 4. 10.>

라.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 : 관광·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마. 복합개발진흥지구 :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바. 특정개발진흥지구 :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제107조(취락지구에 대한 지원)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단취락지구 :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2. 자연취락지구

가.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·수도공급설비·하수도 등의 정비

나. 어린이놀이터·공원·녹지·주차장·학교·마을회관 등의 설치·정비

다. 쓰레기처리장·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·개량

라.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·개량

마. 주택의 신축·개량